

DIC 그룹 행동규범  
STANDARDS & GUIDELINES





## DIC 그룹 행동규범에 대해서

DIC 그룹은 현재 60 개국을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자동차, 전기, 식품, 주택 등의 분야에서 인쇄 잉크, 유기 안료, 합성수지 등의 제품을 통해 “색채”와 “쾌적”을 제안함으로써 널리 사회의 요구에 응해 왔습니다.

2014년 월드컵 축구가 개최되었습니다만, 회사의 사업활동은 축구 시합에 비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개의 선수는 심(心)·기(技)·체(體)를 연마하고 1 대 1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요구되며 팀으로서는 감독·스텝을 중심으로 대전 상대의 전력을 분석하고, 공수의 전략·전술을 세우게 됩니다.

회사의 경영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업계에서 어떤 포지션을 목표로 하는가? 어떤 매력이나 우위성이 있는 회사로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 사업계획이나 방침을 입안·실행하고, 때로는 리스크를 각오하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사원 한사람 한사람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경쟁회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시책이나 상정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사업활동과 축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성 멤버가 역할을 분담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치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공통점은 경쟁(시합)에 참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룰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일 룰을 위반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되고 레드 카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룰에는 법령, 사회규범, 사내규칙 등이 있습니다만, 이 행동규범은 선케미칼을 포함한 DIC 그룹이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세계 공통의 행동기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인은 DIC 그룹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고객, 거래처, 주주 등의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고, DIC 그룹과 거래해서 좋았다고 하는 말을 듣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업환경은 시시각각 변화되고, 스테이크홀더의 요구나 기대도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DIC 그룹이 제공하는 가치나 공헌도 스스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가치관을 여러분과 공유함과 동시에 “좋은 일을 한다”는 양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와 과제에 힘써 주십시오.

DIC 그룹은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자랑스러운 기업시민”으로 계속 존속하는 것을 목표로 유엔 글로벌 컴팩트(GC)에 참가하여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규격·ISO26000의 가이드 라인을 감안하면서 기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규범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이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지구환경 유지에 공헌하게 되고 DIC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DIC 그룹의 총력을 결집하면 목표로 하는 모습을 향해 더욱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014년 7월

DIC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집행임원  
나카니시 요시유키(中西義之)

## 목차

---

i	<b>DIC 그룹 행동규범에 대해서</b>	
1	<b>“The DIC WAY”</b>	
2	<b>DIC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b>	
4	<b>비즈니스를 실천함에 있어서 기본은 무엇인가?</b>	
	이것이 전부인가? .....	4
	국가에 따른 차이는? .....	4
	누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는 것인가? .....	4
	어떻게 하면 준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5
	컴플라이언스 위반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의 대응은? .....	5
	조사에의 협력이란? .....	5
	누가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인가? .....	5
6	<b>①사원으로서의 권리: 존중, 존엄, 프라이버시</b>	
	기회 균등 .....	6
	괴롭힘 및 차별의 방지 .....	6
	보복의 금지 .....	6
	괴롭힘, 차별 또는 보복에 관한 통보의 방법 .....	6
	직장에서의 프라이버시.....	7
8	<b>②안전·환경·건강</b>	
	DIC 그룹의 안전·환경·건강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	8
	Responsible Care 정신과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8
	목표를 정한 지속적인 개선 .....	8
	관련 법규제의 준수 .....	8
	교육 훈련 .....	8
	조사·감사에 대한 협력 .....	8
	화학물질규제의 준수 .....	8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	8

9	<b>③이해충돌의 회피와 DIC 그룹 자산의 보전에 관한 책임</b>	
	이해충돌이란? .....	9
	DIC 그룹 자산의 이용 방법은? .....	10
	어떻게 그룹의 기밀정보를 보호하면 되는가? .....	10
	지적재산권의 보전, 이용시의 주의 .....	11
	거래에 관련되는 문서 작성·기록 보유의 요건은? .....	11
	전자 메일, 전화, 인터넷의 사용·액세스에 관한 정책 은? .....	11
13	<b>④오직·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정책</b>	
	뇌물수수란? .....	13
	뇌물의 예 .....	13
	대리인, 서플라이어, 컨설턴트, 디스트리뷰터, 조인트벤처, 컨소시엄과의 거래 .....	13
	본 행동규범의 다른 섹션과의 관련은? .....	13
	벌칙 .....	13
14	<b>⑤정부기관 및 국가 공무원과의 관계</b>	
	국가 공무원이나 정부관련 업자에게 대한 증답품이나 지급은 어떤 경우에 부적절한 것인가? .....	14
15	<b>⑥고객, 서플라이어, 제 3자와의 관계</b>	
	고객만족의 유지 .....	15
	제 3자와의 증답품의 교환 및 이벤트에의 출석에 관한 정책 은? .....	15
	제공: 고객 등의 제 3자에게 증답품을 선물하거나 접대를 하는 경우의 룰은? .....	15
	수령: 서플라이어 등의 제 3자로부터 증답품이나 관촉품을 받을 경 우의 룰은? .....	15
	가격 인하 및 리베이트에 관한 정책은? .....	16
	독점금지법/경쟁법상 어떤 행위가 규제되는가? .....	17
	경쟁회사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룰은? .....	17
	거래 제한이란? .....	17
	경쟁 정보에 적용되는 룰은? .....	18
	비방이란? .....	18

SUN CHEMICAL 그룹 사원 및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그룹 각 회사  
사원에 대해

	무역 제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19
	안티 보이콧법이란? .....	19
	수출관리규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19
21	<b>⑦ 자금세탁과 반테러리즘</b>	
	자금세탁 및 반테러리즘에 적용되는 룰은 무엇인가? .....	21
22	<b>⑧ 강제노동, 아동노동, 분쟁광물</b>	
	강제노동의 금지 .....	22
	아동노동의 금지 .....	22
	분쟁광물 등의 규제 .....	22
23	<b>⑨ 내부자거래</b>	
	내부자거래에 적용되는 룰은? .....	23
24	<b>⑩ 적정한 회계와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 통제</b>	
	J-SOX 란? .....	24
	회계 처리 및 보고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	24
25	<b>부속자료 A 위반 보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b>	
27	<b>부속자료 B SUN CHEMICAL 그룹 사원을 대상으로 한 기준</b>	

## “The DIC WAY”

The DIC WAY는 경영 비전, 경영 자세 및 행동 지침이라는 3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는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경영 비전

“Color and Comfort by Chemistry(화학으로 색채와 쾌적을 제안한다)”

“경영 비전”은 우리들 DIC 그룹이 목표로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 경영 자세

“끊임없는 이노베이션에 의해 고객·사회·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에 전력을 기울인다”

“경영 자세”는 우리들 DIC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리킵니다.

### 행동 지침

- 사회의 변화에 대한 감성을 연마하고 시대를 리드하는 사명감을 가진다
- 사회와 지구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의식한 활동을 한다
- The DIC SPIRIT(창업 정신)을 계속 연마한다
- 사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립성을 가진다

“행동 지침”은 우리들 DIC 그룹 사원에게 요구되는 사고·행동의 기본방침을 나타냅니다.



## DIC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The DIC WAY 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DIC 그룹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나 대처 자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엑셀런스(우수함)에 대한 정열** 우리들의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가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업계 No. 1 이 되려고 하는 프라이드가 우리들 활동의 버팀목입니다. 배우는 것, 성장하는 것에 대한 정열이야말로 엑셀런스에 대한 열쇠라고 하는 신념에 따라, 주체적이고 계속적으로 품질개선에 힘씁니다. 열의와 끈기와 높은 목적의식, 승자의 품격을 가지고 목표 실현에 매진합니다.

**성실** 고객, 서플라이어, 계약처와의 거래에서, 또한, 다른 사원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정직, 솔직, 윤리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또, 상호간의 신뢰 구축에 힘을 쓰는 동시에, DIC 그룹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그것이 법적 의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노베이션(혁신)** 항상 고객이나 사회에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최첨단 솔루션을 추구합니다. 또한, 그러한 솔루션 개발에 있어서 사원의 창조성이나 전략적 사고, 끈기를 서포트합니다. 현행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인 진보를 모색합니다.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로부터도 많이 배웁니다.

**안전·환경의 존중과 커뮤니티 의식의 조성** 화학 메이커가 중시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첫째로 안전한 조업에 의한 “안전 확보”가 있습니다. DIC 그룹의 사원은 사원이나 이웃의 건강과 안전이 중시되는 직장 환경을 지키고, 또, 환경에 책임있는 방법으로 제조·사용·폐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자원보전에도 힘씁니다. 나아가, 자신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커뮤니티에서 사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어카운터빌리티(설명 책임)** 개인으로서 또는 회사로서 자신들의 업무 태도나 업무 성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오피스, 연구실, 공장 과 직장은 달라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활동이 가져오는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동시에, 자신의 업무 태도가 동료, 고객, 회사 전체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팀워크** 관계자와의 협력에 의한 무한한 가능성을 믿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동의 목표를 우선시하여 엑셀런스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서로 자극하고 서로 격려하며, 배경이나 전문성이 다른 동료끼리 의미있게 서로 협력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개인의 특이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한사람 한사람의 지식을 전사적으로 공유합니다.

**개인의 존중** 모든 사람들의 존엄, 가치, 창작력을 믿습니다. 워크·라이프·밸런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사원을 공정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처우합니다. 실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를 보상하며, 전문지식·기술을 존중하고, 사원의 관여나 공헌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킵니다. 개개인의 성장이나 능력개발에 투자하는 동시에, 사원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달성감을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리더쉽** DIC 그룹은 업계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신뢰를 쌓아 온 글로벌 리더입니다. 회사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자신들의 활동 분야에서 No. 1 이 되기 위해 힘씁니다. 개인의 리더쉽, 즉 능력, 자신, 기대를 상회하는 결과를 남기고자 하는 열정을 환영하고, 다른 사원으로부터도 같은 의욕을 끌어 냅니다. 고객에게는 최고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성심** DIC 그룹에 소속감을 느끼고 고객이나 다른 사원에 대한 성의와 헌신을 실천합니다. 자신이 가지는 최선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동료에게 가능한 한도의 어드바이스 와 격려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오픈하여 솔직하게 대응합니다. DIC 그룹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개인적인 애착을 가집니다. 전원이 함께 같은 생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모든 수준에 있어서의 이노베이션과, 사려 깊게 리스크에 맞서는 도전정신을 존중·장려합니다. 변화를 환영하는 동시에 유연성이나 순응성을 유지하면서, 성공을 막는 장벽의 극복에 힘씁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은 다이나믹하게 변화되고 있어, 자주 신속한 대응이나 대담한 행동이 요구됩니다만,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행 착오는 배우기 위한 불가결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DIC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

**고객중시** 우리들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사내·사외의 모든 고객에 대하여 타협이 없는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언제든지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을 항상·최대화한다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이루어 집니다. 그것을 위해 고객의 요구를 예측하고 고객의 요구를 상회하는 성능을 실현하며, 더 나아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배경이나 전문성이 다른 동료끼리 개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의미있게 서로 협력하는 것을 지원·장려합니다. 항상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유의하며, 전력으로 비즈니스에 힘씁니다.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동료의 협조 정신을 신뢰합니다. 사내·사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솔직하게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 인권 존중은 현대의 지속 가능한 사회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며, 인권 옹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DIC 그룹은 인권침해를 용인·조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공급망에 의한 준수** DIC 그룹은 구입하는 원료·자재 서플라이어(대리점 포함)에 대해 “DIC 그룹 CSR 조달 가이드 라인”이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련 법령에는 노예 제도나 인신 매매의 박멸, 뇌물 수수나 오직(汚職)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도 포함됩니다.

**서스테인어빌리티(지속 가능성)** DIC 그룹은 “장래 세대의 니즈를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개발”에 유의하면서 사회·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존속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DIC 그룹은 사업활동을 통해 자신의 서스테인어빌리티를 높여 갈 것입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은 개인의 행동이나 비즈니스의 수행에 관한 정책을 나타낸 것으로, 계약상 기타의 고용에 관한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계속적인 고용을 보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SUN CHEMICAL 그룹 사원 여러분에 관해서는 고용은 모두 서면계약에 의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고용관계이며, 사원, SUN CHEMICAL 중 어느쪽이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또한 통지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를 실천함에 있어서 기본은 무엇인가?

DIC그룹의 사원으로서 여러분은 그룹의 가치기준을 인식하고 본 행동규범을 이해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법률 전문가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 행동규범은 공통의 가치관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실천함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입니다.

본 행동규범에 있어서 “DIC그룹” 또는 “그룹 각사”란, DIC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를 말하며 Sun Chemical Group Coöperatief U.A., DIC Asia Pacific 및 적애생투자유한공사(迪愛生投資有限公司)가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나 다수 지분을 갖는 합작회사가 포함됩니다.

DIC그룹의 전사원이 비즈니스를 실천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들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준수할 것.
- 모든 거래에 있어서 정직, 공정하고 성실할 것.
- 일과 사를 구별하고, 이해충돌을 피할 것.
- 공정한 고용관행에 따라, 동료·종업원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 안전한 직장환경의 정비, 환경보호에 노력할 것.
- 거래처 사원이나 관계자의 권리, 존엄,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것.
- 어떠한 종류의 괴롭힘도 차별도 없는 직장환경을 실현할 것.
- DIC그룹의 기밀정보를 부적절한 공개로부터 보호할 것.
- 고객, 서플라이어, 공무원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부적절한 지급, 선물 또는 사례를 수수하지 않을 것.
- 적절한 승인, 법적 체크를 받지 않고 타인이나 타사로부터 기밀정보를 받거나 제3자에게 유리한 비밀보장계약에 서명하거나 하지 않을 것.
- 적절한 승인, 법적 체크를 받지 않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

- 그룹 각사의 재무정보의 기록에 있어서, 정확하고 완전을 기하는 동시에,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시키고, 적용되는 법률이나 회계 기준을 준수할 것.
- DIC그룹의 고객, 서플라이어, 경쟁회사, 각국 정부와의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경쟁법, 독점금지법, 뇌물방지법, 금융상품거래법, 세법, 테러 대책법 등, 거래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할 것.
- 증오 범죄를 지지하는 그룹이나 테러리스트와 같은 반사회적 세력의 요구에 대하여는 단호한 태도로 임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

### 이것이 전부인가?

상기는 어디까지나 본 행동규범의 개요이며, DIC그룹의 가치관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식의 일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높은 행동기준을 유지하여 DIC그룹의 평판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상식을 토대로 법적·윤리적 원칙에 대한 이해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책자에 기록된 기준을 숙독해 주십시오.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소재를 특정하여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 본 책자의 설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국가에 따른 차이는?

DIC그룹은 글로벌 기업이므로 본 행동규범에서는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일련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법률이나 관행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히 사원 여러분은 각각의 지역이나 상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준수는 최저한의 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행동규범의 기준이 각 지역의 법률보다 엄격할 경우에는, 본 행동규범에 기재된 더 높은 글로벌 비즈니스 기준을 준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하여 DIC그룹은 전세계 사원이나 고객, 서플라이어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보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누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는 것인가?

본 행동규범은 DIC주식회사 외에 전세계의 그룹 각 회사에 소속된 전사원(이사, 기타 임원, 비상근 사원, 임시 사원, 파견 사원, 출향 사원, 고문, DIC그룹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대리인을 포함)에 적용됩니다.

**어떻게 하면 준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본 행동규범의 준수는 그룹 각 회사와 그 사원의 연대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함과 동시에 최고의 윤리기준을 지키고 그룹 각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현지 커뮤니티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그룹 각 회사의 목표·목적에 달성함에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기준을 전세계의 DIC그룹의 사원에게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룹 사원 전원은 본 행동규범을 비롯해 그룹 각 회사의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규제, 나아가 그룹 각 회사가 정한 정책이나 절차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원은 각각 소속된 그룹 각 회사의 지원하에 본 행동규범을 확실히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DIC그룹이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지, 본 행동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보고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위법 행동이나 비윤리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든, 또는 그룹 각 회사에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었다도 동기 여하와 상관없이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위법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위반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의 대응은?**

여러분은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가 이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원은 본 행동규범, 법률, 또는 DIC그룹의 정책 위반 또는 그 의혹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부속자료 A의 연락처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에 있어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사원 자신이 그 사안을 조사해서는 안되며, 위반하고 있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행해진 보고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비밀로 취급하는 동시에 모두 공정하고 신속하게 담당 임원이 평가·조사를 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강구합니다. 적시 보고에 의해,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DIC그룹의 정책입니다.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고가 성실하게 행해지고 악의에 의거한 것(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것)이 아닌 한, 보고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위반에 관한 보고를 한 자 또는 보고 내용에 관련된 조사에 협력한 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본 행동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됩니다. 그러한 보복에 관련된 자는 모두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조사에의 협력이란?**

모든 사원은 행해진 보고에 관련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하는 그룹 각 회사 및 그 경영 간부는 상황의 시정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누가 질문에 대답해 주는가?**

본 행동규범은 일상 업무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확정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상식이나 판단력에 따라, DIC그룹의 높은 준법정신, 윤리기준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또, 옳은 행동에 대해 어드바이스를 요청해야 하는지도 포함하여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 또는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관련 정책이나 절차, 그룹 각 회사의 사업활동의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또한 법적·윤리적 문제에 관한 어드바이스나 지도의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는, 다음의 담당자·부서 등에 연락해 주십시오. 조언을 구하거나 염려사항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 또는 상사
- 근무하는 회사의 관리 부문의 상위 책임자
- 부속자료 A의 연락처

또한 관련 법령이나 본 행동규범 위반행위를 보고할 경우에는 부속자료 A의 연락처로 반드시 연락해 주십시오.

## ①사원으로서의 권리:존중, 존엄, 프라이버시

### 기회 균등

DIC그룹의 최대 강점은 근무하는 사람들의 재능과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직업윤리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업무상 모든 인간 관계의 기반으로서 서로에의 경의를 유지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차별, 괴롭힘 등의 사회문제나 약습과는 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DIC그룹은 가능한 한 건설적, 긍정적, 그리고 자유로운 직장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인사 관련 의 구체적 제도나 정책은 그룹 각 회사나 부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DIC그룹 공통의 지침이 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DIC그룹의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인, 채용, 능력개발, 승진, 보수, 기타 고용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인종, 종교, 성별, 피부색, 국적, 연령, 기혼·미혼의 여부, 성적 지향, 신체·정신장애, 병역 유무 외에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기타의 특성과 상관없이, 또한 그룹 각 회사가 소재하는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 프로 의식이 높고, 안전하며, 약품이나 차별이 없는 직장환경을 유지할 것.
- 실적에 따라 사원을 평가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경쟁력 있는 대우를 제공할 것.

### 괴롭힘 및 차별 방지

DIC그룹의 정책이나 많은 국가의 법률로, 직장이나 회사, 또는 비즈니스, 이벤트, 회합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 괴롭힘, 왕따, 협박, 보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아래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언어에 의한 괴롭힘: 민족·인종·종교·성에 관한 중상, 경멸적인 발언, 협박, 위협적인 발언.
- 시각적 괴롭힘: 민족·인종·종교·성에 관한 경멸적, 모욕적, 협박적 또는 굴욕적인 문서, 인쇄물, 전자자료, 제스처, 사진, 물건의 게시, 진열, 송부 또는 남의 눈에 띄도록 제공하는 것.
- 신체적 괴롭힘: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개인 또는 그 소유물への 접촉, 왕따, 행동 방해.
- 성적 괴롭힘(성희롱): 고용, 승진, 기타의 이익 제공이나, 요구를 거부하면 고용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협박 등, 묵시·명시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성적인 요구.
- 차별: 성별, 연령, 국적,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신조, 사회적 지위, 문벌, 기혼·미혼 여부, 성적 지향, 신체·정신 장애 등, 관련 법규제에 의해 보호되는 속성에 따른 채용, 승진, 보수, 직무내용, 노동시간, 해고 등, 고용면에서의 차별.
- 체벌: 언어에 의한 학대나, 심리적 또는 신체적 구속.

### 보복 금지

보복이란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해 사내외에 통보하거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한 사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말합니다. 보복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이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괴롭힘, 차별 또는 보복에 관한 통보 방법

괴롭힘, 차별 또는 보복에 관한 고충은 부속자료A에 게재된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고충에 대한 연락방법에 대해서도 부속자료A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직장에서의 프라이버시

직장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DIC그룹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사원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보이스 메일, 전자메일 등 DIC그룹 각 회사의 기기·설비를 이용하여 유지·관리·송수신·축적되어 있는 정보나 파일에 관해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인사부문이 유지·관리하거나 또는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제되고 있는 정보나 파일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는 사원의 컴퓨터 파일이나 송수신 파일, 보이스 메일, 전자 메일 등 DIC그룹의 미디어를 검사·조사·검색하기 위해 관련된 컴퓨터 비밀번호를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유럽연합(EU)에서는 사내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이더라도 개인의 사적인 정보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률 및 지령에 의해 보호·규제되고 있습니다. DIC그룹은 정책으로서 해당 법률 및 지령을 준수합니다.

사원의 비공개 개인정보에 관한 프라이버시법은 전자적 통신수단에 의한 정보의 입수 가능성의 확대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에서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DIC그룹은 정책으로서 사원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모든 프라이버시법 및 EU지령을 준수합니다.

(주)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복잡하기 때문에 본 행동규범에서는 DIC그룹 및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그 전부를 상세하게 기재할 수 없습니다.

사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DIC그룹의 기본적인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되는 관련법령에 따라 DIC그룹 사원의 개인정보의 사내 또는 사외에 있어서의 공개에 관한 적절한 절차를 준수할 것.
- 개인정보에의 접근은 의료·후생관련 제도, 프로그램, 기타의 급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원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DIC그룹의 사원과 서비스업자 및 고용에 관한 인사부문에 한정될 것.
- 사원의 개인정보를 그룹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그 사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것. 단, 사원의 개인정보 중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 연금 등의 급부제도나 프로그램 관리의 일환으로서 제3자에의 제공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3자에의 제공이 인정되고 있거나 또는 의무화 되어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 전(前) 사원의 정보에 대해서도 현사원의 정보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할 것.

## ②안전·환경·건강

### DIC 그룹의 안전·환경·건강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DIC 그룹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노동안전 및 보안방재를 포함한 안전·환경·건강의 확보가 경영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이를 사업활동 모두에 있어서 철저히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 하에 생물다양성을 포함해 지구환경 등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Responsible Care 정신과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Responsible Care란, 제품 개발부터 원료 조달, 제조, 물류, 사용, 최종소비를 거쳐 폐기에 이르는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안전·환경·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입니다. DIC 그룹은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사원 여러분들은 다음의 실행이 요구됩니다.

- Responsible Care 정신을 이해·자각하는 것.
- 신제품, 제조 프로세스 개발시에는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안전·환경·건강에의 영향을 파악하여 부(負)의 영향을 가능한 한 절감하는 것.

### 목표를 정한 지속적인 개선

DIC 그룹은 모든 사원, 거래처, 지역사회의 안전·건강을 제일로 기업활동을 계속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향해 보다 적은 환경 부하로 보다 많은 가치 창조를 목표로 합니다.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개선을 도모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DIC 그룹 사원들에게는 다음의 실행이 요구됩니다.

- 안전·건강과 관계된 회사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것.
-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회사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것.
- 회사가 정하는 긴급대응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긴급시에는 해당 계획에 의거해 행동하는 것.

### 관련법규제의 준수

DIC 그룹은 환경의 보호·유지, 사원·고객·사업을 전개하는 현지 커뮤니티의 건강·안전의 추진, 그리고 안전·환경·건강에 관한 모든 관련법령의 준수를 약속합니다.

안전·환경·건강과 관계된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본 행동규범에 제시된 사고방식이나 가치에 따른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DIC 그룹의 정책입니다. 또한 DIC 그룹은 안전·환경·건강에 관한 모든 관계국의 업계규범이나 습관을, 이것들의 준수가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존중합니다. DIC 그룹 사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안전·환경·건강과 관련된 법규제, DIC 그룹의 정책 및 그 주지를 따르는 것이 요구됩니다.

### 교육 훈련

DIC 그룹은 안전·환경·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원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사원 여러분들은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이해하고, 회사의 안전·환경·건강에 관한 대처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조사·감사에 대한 협력

정부기관으로부터 안전·환경·건강문제에 관한 조사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하에 조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시하는 내부감사에도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책임자의 지시 하에 협력해 주십시오.

### 화학물질규제의 준수

국가·지역에 따라서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수출 혹은 사용에 대한 엄격한 법규제가 있습니다. 그룹 각 회사는 각각, 그 회사가 입지하는 국가의 법규제를 준수할뿐 아니라, 계약처나 제품 유저가 입지한 국가의 법규제도 준수해야 합니다. 사원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존 화학물질의 사용 및 수량에 대한 법규제를 비롯하여 화학물질과 관계된 현행 법규제에 대해 항상 조사·과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품질 보증 및 품질관리

DIC 그룹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가 경영의 기반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사원들은 고객이나 시장이 요구하는 품질에 일치하는 제품, 서비스, 정보의 제공을 위해 진력하는 한편, 품질 향상과 품질보증 강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③이해충돌의 회피와 DIC 그룹 자산의 보전에 관한 책임

DIC 그룹의 사원인 여러분들에게는 DIC 그룹의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저한의 의무로서 이해충돌을 피함과 동시에 DIC 그룹의 기밀정보의 부정이용·누설을 방지하고, 자산 이용이나 다른 사원과의 상호관계와 관련한 DIC 그룹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해충돌이란?

이해충돌은 개인 또는 제 3 자의 이익과, DIC 그룹에 대한 의무가 상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예로서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나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 외의 일을 위해서 사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적인 활동과 DIC 그룹의 비즈니스상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의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해충돌을 수반하는 일체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의 예로서 이하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경합타사, 서플라이어 또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것들의 컨설턴트, 고문,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일하는 것.
- 그룹 각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경합, 혹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 사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 단,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CEO/사장 또는 CFO/경리부장으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DIC 그룹의 설비, 자산 또는 시간을 사용해서 DIC 그룹 이외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 단,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CEO/사장 또는 CFO/경리부장으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경합타사, 고객 또는 서플라이어와의 금융거래에 종사하거나, 투자하거나, 지배하는 것. 단,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

는 회사에 대해 5%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원래 그룹 각 회사의 것인 사업 기회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
-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CEO/사장 또는 CFO/경리부장으로부터 사전서면승인을 받지 않고, DIC 그룹과의 상거래에 의해 자기자신, 배우자 또는 가족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
- 가족 또는 배우자를 채용하거나, 가족 또는 배우자를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부문에 영입하거나 하는 것. 단,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CEO/사장 또는 CFO/경리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를 대표해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제 3 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수 또는 물품을 받는 것.
- 그룹 각 회사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고 하는 제 3 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수 또는 물품을 받는 것.
- 동시에 복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 또는 외부의 영리기업으로부터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그것들을 위해 일하거나, 그것들의 컨설턴트, 고문,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 단,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CEO/사장 또는 CFO/경리부장으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한 승인은 이해충돌이나 업무에의 악영향, 또는 그것들의 징후나 가능성이 없으면 통상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재한 이해충돌 정책을 위반한 사원은 해고를 비롯한 징계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원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관해서 의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활동에 중사하기 전에 부속자료 A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DIC 그룹의 자산 이용방법은?**

DIC 그룹의 자산의 취득, 유지관리에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사원들에게는 이들 자산을 의도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함과 동시에 그 가치나 유용성을 보전·유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DIC 그룹의 자산의 부정이용, 남용, 파괴는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사원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됩니다.

기계류, 휴대폰 등의 휴대폰형 전자기기, 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차량 등, 사원에게 맡겨진 DIC 그룹의 자산은 비즈니스상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사원은 상기 기기 등의 회사자산을 DIC 그룹이나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정책은 물론이고, 해당 기기의 취급에 관한 법규제나 안전한 사용방법을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사원은 회사 자산의 개인적 이용이 제한됨과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그것들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원은 그룹 각 회사의 기기나 소유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매각, 리스, 대여, 기증,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룹 기밀정보를 보호하면 좋을 것인가?**

그룹 각 회사의 기밀정보는 가장 가치가 있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룹 각 회사의 제품, 계획, 비즈니스에 관한 정보 가운데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기밀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허가없이 부정하게 공개하면, DIC 그룹의 경쟁력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동시에 귀중한 자산을 헛되게 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부정공개 또는 부정이용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벌금이나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거나 징역형이 부과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객 리스트나 자산 기록, 기타 비즈니스 정보는, 비록 공개된 정보원에서 종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DIC 그룹의 소유물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취득·이용할 수 없습니다.

DIC 그룹의 기밀정보에는 “기밀”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에의 액세스는 “알 필요가 있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개인적 이익이나 그룹 각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 요구됩니다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로부터 사전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는 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뿐 아니라 고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적용됩니다.

나아가 사원으로서 전자기록이나 보이스메일도 포함하여 모든 비즈니스 정보를 보전·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의 부적절한 변경, 손괴, 개찬,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DIC 그룹의 모든 기밀정보에 대해 보안이 적절히 확보되거나 혹은 전자적으로 보호되고, 액세스 권한을 갖지 않은 인물에게는 입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부주의한 정보공개를 피하기 위해 방수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무선통신이나 휴대통신의 이용에 의한 전자적 수단으로의 정보 누설을 막을 책임도 있습니다.

사원이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서, 파일, 프로그램에 한정됩니다. 사원은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로부터 지명된 담당자의 허가없이 (DIC 그룹, 제 3자 중 어느 쪽의) 기밀정보도 액세스 또는 다운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상 전자기록 및 전자메일 기록에의 액세스가 허가된 사원은, 적절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들 시스템의 지원 또는 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작업 외에 이들 정보에 액세스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파일, 비밀번호, 컴퓨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열람, 복제, 배포, 소거, 손괴, 개편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수단으로 입수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하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보전, 이용시의 주의**

DIC 그룹의 특허, 의장, 상표, 노하우, 기술 데이터,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을 보전·유지하고 사업에 활용하는 것, 체결하고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준수하는 것이 DIC 그룹의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사원은 워드프로세서, 재무보고, 데이터 관리 등 수많은 용도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대개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해 사용조건,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적인 저작권법에 의해 라이선스가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위법복제·사용에 대해서는 민사·형사죄가 부과됩니다. 유서는 각자 소프트웨어 사용상의 제약에 유의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의 정보시스템 부문의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취득해 주십시오.

사원은 DIC 그룹이 공급한 기기 혹은 하드웨어에 사전허가 없이 사적인, 혹은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원은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에 추가하여, 사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의해 고안·개발한 성과, 정보, 발명은 모두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들 성과물은 모두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에 신속히 공개함과 동시에 회사에 양도해야 합니다.

**거래에 관한 문서 작성·기록 유지 요건은?**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가 하는 지불, 지출,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승인을 받고 기록을 남기는 동시에 지불액 모두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것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수증 및 출금전표는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장부 및 기록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재되는 동시에 그 목적을 정확하게 기재한 적절한 서류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리처리, 비자금, “장부의 거래” 또는 비밀계좌, 개인에

의 리베이트, 정치단체·정치가에의 위법헌금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은행계좌의 개설·해약시에는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절차 및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 주십시오. 또한 현금지불 관리의 적절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적절한 서명권한을 확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자메일, 전화, 인터넷의 사용·액세스에 관한 정책은?**

DIC 그룹은 비즈니스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액세스를 비롯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툴, 학습 툴로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DIC 그룹의 이익과도 연결되고, 업무나 개개의 활동 개선에 의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해지는 경우에는, 개인의 교육이나 능력개발, 연수를 위해 단시간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시간 외와 관계 없이, 근무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의 오락이나 이익, 기타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나아가 그들 인터넷 서비스나 기기를 이용하여 도박, 외설적인 문서의 열람 또는 공격적, 선동적, 기타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콘텐츠에의 액세스, 성희롱 기타의 정책에 위반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는 인터넷이나 전자메일의 이용상황을 감시·기록함과 동시에 DIC 그룹의 정책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쾌, 위법, 또는 비즈니스와 관계가 없는 사이트에의 액세스를 막거나 거부·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사이트가 DIC 그룹의 정책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DIC 그룹의 정보시스템의 담당부문에 연락해 주십시오.

### ③ 이해충돌의 회피와 DIC 그룹 자산의 보전에 관한 책임

인터넷상에서의 활동 및 휴대폰 등의 무선미디어의 이용은 공적인 활동으로 간주되며, 각자에게 양식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관리 하에 있는 인터넷의 전자메일 시스템은 적용되는 전자메일 및 인터넷 정책을 준수한 상태에서 비밀안건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밀 또는 비밀사항을 포함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송신 전에 수신자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통신 미디어를 사용해 통신 및 정보교환을 할 경우, 이하에 제시하는 관련법 규제나 DIC 그룹의 정책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 기술,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것.
-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의 송수신 관리에 관한 것.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 저작권, 상표, 광고와 관련된 법령과 관련된 것.
- 관련된 그룹 각 회사의 정책에 의거한 사내이용규제에 관한 것.

관련법령 및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에 있어서 비즈니스상 전자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자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 추가하여, 비즈니스상 사용되고 있는 전자통신 혹은 보이스메일 통신은 DIC 그룹 혹은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기록 및 소유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사원으로서의 권리”라는 제목의 섹션에 기재한 바와 같이 DIC 그룹은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해 작성, 송수신되는 메시지나 기타 자료나 데이터에 대해 상시 감시·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합니다.

## ④오직·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정책

DIC 그룹은 뇌물수수 및 오직에 관한 어떠한 위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DIC 그룹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오직·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정책은 DIC 그룹이 사업을 전개하는 모든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이나 상거래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준수에 관해 교섭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룹 각 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수수 또는 오직에 관여한 임원, 관리직, 사원, 대리인, 서플라이어를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 뇌물수수란?

뇌물수수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개인 또는 단체(공적기관, 민간기업을 불문한다)와의 사이에
- 상대방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할 목적으로, 혹은 부정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 금전, 기타 편익을
- 제공, 약속, 제공하는 것, 또는
- 요구, 수령에 합의, 수수하는 것.

“부정행위”란, 성실하게 공정하게 또는 신뢰받고 있는 입장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배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 뇌물수수의 예

뇌물수수의 정의는 상당히 넓으며, 금전 수수에 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하와 같은 사례도 뇌물수수에 해당됩니다.

- DIC 그룹이 낙찰받도록 조치해 줄 것을 기대 또는 희망하고 고객에게 금전을 지불하거나 증답품을 보내는 것.
- 형식,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라이선스 발행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또는 일상적인 재량에 의하지 않는 직무 혹은 행위 실시의 확보 혹은 촉진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지불을 하는 것(“facilitating” 또는 “grease” payment(원활화를 위한 지불)라고도 불립니다).

- 시설에 대한 시찰시 공무원에게 퍼스트 클래스로의 이동이나 5성급 호텔에서 의 숙박을 제공하는 것.

DIC 그룹은 “facilitating” 및 “grease” payment 를 금지합니다.

### 대리인, 서플라이어, 컨설턴트, 디스트리뷰터, 조인트벤처, 컨소시엄과의 거래

그룹 각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리인 또는 서플라이어나, 컨설턴트, 디스트리뷰터, 조인트벤처/컨소시엄의 파트너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오직·뇌물수수를 일절 용인하지 않는다는 DIC 그룹의 정책을 인식하도록 하고, 상대방에 있어서도 동일한 엄격한 정책을 정비·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룹 각 회사를 대리하는 자나 사업상의 파트너의 거래에 대해 결코 “보고도 못 본 척”을 하거나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지된 행위에 의해 여러분 자신 혹은 그룹 각 회사가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나 서플라이어, 컨설턴트, 디스트리뷰터, 조인트벤처의 파트너, 기타 그룹 각 회사를 대리하는 사업상 파트너를 선택할 때에는 적절하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행동규범의 다른 섹션과의 관련성은?

오직·뇌물수수에 관해서는 본 행동규범의 “정부기관 및 국가공무원과의 관계” 및 “고객, 서플라이어, 제 3자와의 관계” 섹션도 참조해 주십시오.

### 벌칙

이 정책의 위반은 징계처분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뇌물수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당하는 그룹 각 회사 및 개인 양쪽에 대해 무거운 형사죄가 부과됩니다. 뇌물수수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경우, 여러분에게는 본 행동규범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⑤정부기관 및 국가공무원과의 관계

DIC 그룹은 비즈니스 활동이나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여러 정부나 부처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언제 어떠한 경우도 관련된 모든 법률과 DIC 그룹의 정책인 “성실할 것”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룹 각 회사는 관련법령을 준수할뿐 아니라, 정부유관기관과의 사이에 신뢰와 협력적인 관계를 확립·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가공무원이나 정부 관련 업자에 대한 증답품이나 지불은 어떤 경우에 부적절한가?

그룹 각 회사가 비즈니스를 유지·확대하거나 부정합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그 밖의 사람에게 부정행위를 하게 하거나 혹은 부정행위의 보답으로 해 줄 것을 의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것을 공여, 대여, 제안, 약속, 권유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한 부적절한 증답품이나 지불은 공무원에 대한 뇌물, 리베이트, 증답품, 사례, 편의 도모를 위한 지불 혹은 사례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소한 사례나 저렴한 식사였다고 하더라도 자재 조달 담당의 국가공무원에게 제공하면, 부적절 또는 위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한의 금액이었다고 하더라도 법 집행기관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 뇌물이나 리베이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엄격히 집행되고 있으며, 그룹 각 회사 및 관여한 개인 양쪽 모두 엄벌에 처해집니다. 이들 법률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 어느 그룹 각 회사를 위해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본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대상범위는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 반드시 국가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 예를 들어, 국제위원회나 국제기관의 멤버,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영리기업의 이사, 임원, 사원, 그 친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약소하다고 하더라도 지불은 물론, 오락이나 식사를 포함해 기타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것을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국가공무원이나 상기와 같은 다른 정부관계자, 의원후보자, 그 친족과의 사이에서 제안, 약속, 수수, 공여하는 것은 일체 금지됩니다.

그 예외로서 이하 모두를 충족시키면 동시에 증답품이나 접대에 관한 물이나 금액제한에 대해 그룹 각 회사에 있어서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그 가이드 라인을 따르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적당한 식사나 증답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비즈니스 미팅이나 비즈니스상의 목적이 있을 것
- (2) 합리적인 금액일(사치스럽지 않을) 것
- (3) 해당 공무원의 행위나 결정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또한 그렇게 간주될 우려가 없을 것
- (4) 비즈니스 관계상이나 현지의 관습상 적절할 것
- (5) 자국 및 상대방국가에 있어서 합법일 것
- (6) 상대방의 귀속처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을 것

예를 들어 상기에는, 내용이 정도에 알맞고 문화적으로도 적절한 물건(그룹 각 회사의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나 머그잔 등)이나, 현지 관습을 따른 물건(holiday 시즌에 쿠키 등의 과자를 선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SUN CHEMICAL 그룹 사원에 대해**  
**Sun Chemical은 공무원이나 정부 관련 업자에게 증답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예외없이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⑥고객, 서플라이어, 제 3자와의 관계

### 고객만족의 유지

DIC 그룹의 사원은 비즈니스의 모든 장면에서 항상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중시하며, 고객과의 양호한 관계를 구축·강화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DIC 그룹의 사원은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영업활동에 타이밍 좋게 적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DIC 그룹의 사원은 고객의 장래의 니즈를 예측함과 동시에 고객의 기대를 상회하는 품질 수준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 제 3자와의 증답품 교환 및 이벤트에의 출석에 관한 정책은?

비즈니스상 자그마한 증답품을 교환하거나 회식시 상대방의 음식비를 부담하거나 접대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증답품, 음식, 연극이나 스포츠 이벤트 등의 오락 제공)가 적절한지 여부는 그 지역의 상황이나 관습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증답이나 접대의 범위는 이하와 같습니다.

### 제공: 고객 등의 제 3자에게 증답품을 선물하거나 접대를 하는 경우의 물은?

자사 비즈니스 촉진을 목적으로 기획한 회사 주최 이벤트나 소수인이 참가하는 회사 주최 이벤트는 개최가 인정됩니다. 스포츠 이벤트, 증답, 판촉 이벤트 등은 적절히 실시하면 효과적인 접대방법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비즈니스 거래과정에서 검소하고 적절한 내용인 한, 식사를 고객 등에게 제공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제 3자와 강고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접대나 판촉활동은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본 행동규범은 그러한 프로세스에서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적절한 접대와는 대조적으로, 용자, 뇌물, 사례금, 보수, 무료 서비스, 고가의 물품을 DIC 그룹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혹은 비즈니스를 하고

자 생각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상업뇌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하기 위해 DIC 그룹은 고객, 잠재고객, 또는 그 대리인, 사원, 친족, 수탁자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대리인이나 제 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전을 지불하거나 고가의 증답품, 서비스, 판촉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법무부장, CEO/사장 또는 CFO/경리부장으로부터 사전서면승인이 필요합니다. 증답품으로 현금 또는 현금 동등물을 제공하는 것은,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DIC 그룹의 사원이 제 3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호화로운 증답품이나 오락(여행, 보석장식품류, 고가의 스포츠 용구, 무료숙박, 이동수단 등), 기타 현저히 고가의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수령: 서플라이어 등의 제 3자로부터 증답품이나 판촉품을 받을 경우의 물은?

DIC 그룹은 그룹 각 회사의 사원, 대리인, 고문, 컨설턴트가 DIC 그룹의 서플라이어, 잠재서플라이어, 또는 그들의 대리인, 사원, 친족, 수탁자로부터 약속하지 않은 증답품, 사례, 서비스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약소하지 않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령할 경우에는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법무부장, CEO/사장 또는 CFO/경리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DIC 그룹 사원은 그룹 각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시 또는 유지한다는 명시 또는 묵시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금 또는 기타 가치가 있는 것을 제 3자로부터 받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DIC 그룹과 거래를 하고 있거나 혹은 거래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일상

적인 거래과정에서 감소하고 적절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한, 식사 제공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잠재)서플라이어, (잠재)서비스업자 등의 제3자가 주최하는 행사, 스포츠 이벤트, 오락 이벤트, 기타 유사한 활동은, 이들 이벤트가 그룹 각 회사와 제3자와의 양호한 비즈니스관계 구축과 관련된 것이라면 출석 또는 참가해도 무방합니다.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법무부장, CEO/사장 또는 CFO/경리부장에 의한 서면승인이 없을 경우, DIC 그룹 사원은 (잠재)서플라이어, (잠재)고객, 또는 그 대리인, 사원, 친족, 수탁자가 주최 또는 참가하는 비즈니스회합, 세미나 등의 이벤트와 관련해 이동수단, 호텔 기타에서의 숙박, 여행 등의 공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이벤트가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하여 상사 또는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법무부장, CEO/사장 또는 CFO/경리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원의 참가비용은 그룹 각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사원은 자신의 여비 및 숙박비를 자신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룹 각 회사는 제3자와의 관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발생하는 비용과 DIC 그룹의 활동을 결부시킴으로써 창출되는 효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할인 및 리베이트에 관한 정책은?**

수수료, 할인, 선불 리베이트, 리베이트, 환불, 기타 이것들과 유사한 지불을 고객, 서플라이어, 디스트리뷰터, 계약처, 대리인 또는 컨설턴트(이하 “사업체”라고 한다)에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하의 조건을 따라 주십시오.

- 사업체와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개설된 그 사업체의 계좌로 환불할 것.
- 그룹 각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체에 대해 특정한 상거래의 결과로 그룹 각 회사의 수표를 발행할 것.

- 사업체와 그룹 각 회사와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있는 해당 사업체의 은행 계좌로 그룹 각 회사가 전자송금에 의해 지불할 것.

그 밖의 지불방법은 일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 또는 현금을 대신하는 물품; 국외 계좌, 명의인불명 계좌, 제3자 계좌로의 송금; 과잉청구를 받은 후 초과분의 리베이트 또는 환급; 사업체와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너, 임원, 이사의 개인 계좌로의 지불; 기타, 외부관계자가 지불을 은폐·위장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이용한 지불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행위이며 일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룹 각 회사가 의한 지불은 반드시 그룹 각 회사에 고객계좌를 등록하고 있는 사업체, 혹은 그룹 각 회사가 서비스 또는 제품 제공을 받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하여야 합니다.

사업체측으로부터의 지정에 의해 해당 사업체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룹 각 회사가 해당 사업체의 자회사나 관련회사, 또는 해당 사업체 외의 회사나 개인에의 지불 요구를 받았을 경우, 해당 사업체로부터 그러한 지불의 승인 및 지시를 명기한 문서를 그룹 각 회사가 받지 않는 한, 해당 사업체 외의 다른 회사나 개인에의 지불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체로부터의 승인문서는 해당 사업체의 레터 헤드에 붙은 것으로, 권한을 분명히 소유하는 해당 사업체의 임원, 관리직 또는 이사가 서명(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지불을 할 경우, 그룹 각 회사에 있어서 승인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체에 대해 할인, 리베이트, 환불을 할 경우에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그룹 각 회사의 CFO/경리부장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자의 사전서면승인(경우에 따라서는 기타 사내 절차)이 필요합니다. 상기 지불에 관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룹 각 회사에 있어서 승인권한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문의해 주십시오.

**독점금지법/경쟁법상 어떤 행위가 규제되는가?**

많은 국가들에서는 매도자/고객(매수자)의 관계, 특히 고객이 유통업자로서 제품을 재판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비용을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고객의 경쟁력 제한을 의도한 가격 설정에 관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위법입니다.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서 이하와 같은 행위는 피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계획의 실시에도 관여하거나 합의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상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주십시오.

- **재판매가격의 유지:** 재판매한다는 전제로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재판매시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 금액을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재판매의 제한:** 비즈니스상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판매조건에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제한, 특정고객에의 판매 금지, 영업피지협정 기타 이들과 유사한 행위는 모두 의심스러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것들을 합의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신중하게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끼워팔기 판매:** 여러 제품을 “패키지화”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개개의 제품도 각각 개별적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함에 있어서 별도의 제품 또는 서비스 구입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가격차별:** 구입 수량, 성능, 특수한 사양 등 가격차를 정당화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고객마다 판매가격에 합리적인 차이를 두는 것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의 가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화의 기본이며, 마케팅이나 판매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가격차가 제조 비용이나 운송 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경우나, 경합타사의 가격에 대응하는 것일 경우와 같이, 차별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매매거래에 있어서의 가격차별 및 판매 촉진을 위한 할인 등에 의한 차별을 금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법률은 특히 미국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며, 어떤 경우에 경합관계에 있는 고객 사이에 유.불리가 발생하는 판매에 해당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허위표시:** 제품의 제조자, 원산지, 성분, 품질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초래하거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 라벨, 광고, 기타 행위는 금지됩니다.
- **카르텔:** 카르텔이나 카르텔협정에의 관여는 금지됩니다.

**경합타사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틀은?**

경합타사와의 교류는 비즈니스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격렬하게 경합하고 있다고 해서 정당한 협력이나 교류까지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계단체, 기준설정기관, 자선단체, 교육기관을 통해 경합타사와 서로 협력하는 것은 장려되며, 유익합니다. 그러나 경합타사 사원과의 접촉은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거래 제한이란?**

거의 모든 국가들의 독점금지법 및 경쟁법은 경합타사와 정할 수 있는 합의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래 또는 가격경쟁을 제한하려고 하는 계획은 위법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제한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비록 논의한 내용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혹은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거래 제한의 공모로 간주되어 위법입니다.

경합타사와의 위법한 합의의 예로는 이하의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 가격, 가격에 관한 조건, 할인, 지불조건, 리베이트, 무료 제품·서비스·발송 등에 관한 조건을 정하는 합의.

- 수량, 고객, 판매지역의 할당에 관한 합의, 또는 일정한 시장이나 특정 고객에 대해, 또는 특정 지역에서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
- 제품의 개발 또는 생산을 제한하는 합의.
- 특정 고객이나 서플라이어와의 거래를 거부하거나, 우대하고자 하는 특정 서플라이어와의 거래를 유도하는 합의.

경쟁과 관련된 법률의 위반은 매우 중대합니다. 경합타사가 동석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러한 논의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혹은 그러한 화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버렸을 뿐이더라도, 합의가 있었다고 추론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합타사의 사원과는 구체적인 가격, 고객, 서플라이어나 제품계획에 대해 절대로 화제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경합타사가 출석한 회합의 장소에서 위법한 화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즉시 논의를 중지하도록 주장하거나 그 자리에서 떠나거나 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이 입증되었을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포함한 법적 조치가, 그룹 각 회사에 대해서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합정보에 적용되는 룰은?**

합법적으로 입수한 경합정보는 그룹 각 회사가 대상으로 삼는 시장에 있어서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조사, 제품평가·시험,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경합타사가 공표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검토, 시장이나 업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컨설턴트의 활용 등은 합법적인 비즈니스 툴입니다.

그러나 윤리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수단에 의해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 스파이 활동, 부정 액세스, 절도, 경합타사 사원에의 뇌물 공여 등의 위법한 수단에 의해 경합타사의 비밀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그것에 해당됩니다. 윤리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수단에 의해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받았을 경우, 또한 그러한 정보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담당 임원 또는 법무부에 연락해 주십시오.

**비방이란?**

회사의 평판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비방이란, 어떤 회사나 그 제품, 비즈니스, 경영진, 사원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그 회사나 제품 등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심는 것을 의도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경합타사의 제품이나 경영진, 사업, 기타에 대해 허위의, 또는 오인 시킬만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은 모두 진실이고 관련 사실·데이터에 의거한 것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사 비즈니스의 평판, 재무상황 또는 법적 문제에 대해 코멘트 하거나 추측 해서는 안 됩니다.



**SUN CHEMICAL 그룹 사원 및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그룹 각 회사 사원에 대해**

[주: 그 밖에 그룹 각 회사에 대한 수출관리규제에 대해서는  
DIC 주식회사 법무부에 확인해 주십시오.]

**무역 제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Sun Chemical 그룹 및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그룹 각 회사의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거래는 미국연방정부 및 유럽연합 당국이 정한 규제에 의한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 미국 시민이 관리직, 임원이나 이사를 맡고 있는 미국 이외의 회사(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그룹 각 회사의 일부가 이에 해당), 미국제 제품을 원료로 이용하거나 미국제 제품을 재판매하는 모든 회사는 미국의 우호국에 대한 경제 보이콧에 참여하거나 수출입금지국에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티보이콧법이란?**

안티보이콧법의 목적은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하는 경제 보이콧을 회사가 지원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있습니다. Sun Chemical 그룹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그러한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및 유럽 국가들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적용되는 엄격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대상회사 및 그 사원이 인종, 종교, 국적을 이유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고객이나 잠재고객에 제공함으로써 허가되지 않은 보이콧에 협력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법률은 그룹 회사와 보이콧되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보이콧에의 참여를 요구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정부집행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계약서, 입찰 안내서, 신용장, 주문서, 잠재서플라이어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서 등 거의 모든 비즈니스 문서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한 국가로부터의 물품 수입을 금하는 조항이나 특정 국가의 항구로 입항할 수 있는 선박에 의한 물품 발송을 요구하는 조항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콧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Sun Chemical 법무부에 즉시 연락하고, 거래를 더 진행시키기 전에 조언·지원을 요청해 주십시오.

**수출관리규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 정부나 유럽연합 및 그 가맹국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에 대해 지금까지 경제 제재를 해 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테러를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거나, 인권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허용할 수 없는 행위에 종사하거나 하는 국가들입니다. 좋은 기업시민으로서 Sun Chemical 그룹 및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그룹 각 회사는 이러한 수출입금지 조치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 및 재무부는 미국 외의 다양한 국가와의 거래를 규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 탈레반(탈레반 지배 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해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제 제재는 2014년 2월 현재의 상황이며, 이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리스트는 Sun Chemical 법무부에 문의해 주십시오.**

법률 집행의 일부로서 미국 재무부의 United State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규제대상국에 소유, 관리되고 있는 회사나 개인, 규제대상국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그것을 대리하는 회사나 개인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리스트에는 테러리스트나 마약 밀수조직 등의 개인·그룹이나 회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개인이나 회사는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혹은 “SDNs”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산은 동결되어 있고, 미국인은 그들과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ages/default.aspx> 및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program\\_tags.aspx](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program_tags.aspx) 를 참조해 주십시오.

상기의 금지사항은 미국제 제품을 원료로 이용하거나, 미국제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미국 시민이 이사회나 경영진으로 가담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해외 관련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상기 국가들이나 회사 등과 거래를 한 회사는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국가들 중 어떤 국가와 직접적으로, 혹은 대리인, 중개업자,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업적 관계를 개시·구축하기 전에 Sun Chemical 법무부와 상담을 해 주십시오. Sun Chemical 법무부는 수출입금지·수출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입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 상무부는 미국 외의 국가들에의 물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리는 수출처의 국가들보다도 수출되는 물품, 서비스, 기술의 종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화학품을 포함한 민감한 물품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출 외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판매·이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래의 기술정보나 하이테크 제품류가 미국 외의 지역에 판매·이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법률은 빈번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수출입금지 대상국·회사에 직접적으로, 또는 제3국의 대리인, 디스트리뷰터, 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제 또는 미국 유래의 물품(해당 물품을 로컬 제품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판매·수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Sun Chemical 법무부에 연락해 주십시오.

유럽연합 및 그 가맹국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거래와 관련해 수출입금지조치나 무역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요건을 모두 열거한 최신 리스트는 이하의 웹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www.eurunion.org/legislat/sanctions.htm](http://www.eurunion.org/legislat/sanctions.htm)

앙고라/UNIT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버마/미얀마, 콩고/자이르, 크로아티아, 아이티, 라이베리아, 마케도니아·구 유고슬라비아공화국, 시에라리온, 수단, 탈레반/알카에다, 짐바브웨에 대해서는 특정 물품 및 특정 구입자(군사 관련 사용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쿠바 및 이란과의 거래에 관하여 유럽연합은 미국에 대항하여 저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연합에 입지하는 회사 및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 쿠바나 이란에의 미국의 제재조치의 준수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쿠바와의 거래의 실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이나 미국으로의 여행자는 쿠바와의 무역을 승인, 촉진, 실시했다고 하여 체포·기소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의 거주자 및 그 근친자는 그러한 거래에 관여했다고 하여 미국에의 입국을 항구적으로 금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임원, 관리직, 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나, 미국제 제품을 쿠바나 이란에 판매한 회사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인 사원이나 관련회사가 미국 내에서 기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출입금지·제재조치는 대상이 갑자기 통지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술한 국가들 중 어떤 국가와의 무역을 개시하기 전에 Sun Chemical 법무부에 상의해 주십시오.

## ⑦자금세탁과 반테러리즘

### 자금세탁 및 반테러리즘에 적용되는 룰은 무엇인가?

미국, 일본, 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는 최근 성립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금융거래를 저지하기 위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금융거래는 조세피난처, 비밀은행계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업 뇌물수수, 탈세, 마약거래 등의 위법거래로 입수한 자금의 “세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아가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국제송금을 추적하거나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터널조직을 특정함으로써 국제테러조직이 자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지역인지와 상관없이, 또한 그 금액과 상관없이 그룹 각 회사가 상대방 및 그 수익자를 파악하지 못한 개인 또는 회사와의 사이에 현금 또는 현금동등물(수표, 전신송금, 환어음, 신용장 등)을 수령, 지불, 송금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행위가 되는 자금세탁활동을 지원·촉진해버리는 위험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거래시에는 이미 알고 있는 합법적인 회사 및 신용이 있는 은행·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만 하도록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자, 신원미상자 또는 “미지의 사업자”(과거에 거래관계가 없었고, 소유자나 지배자가 간단하게 특정할 수 없는 자)와 혹은 그들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룹 각 회사가 자금세탁의 터널회사로 이용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테러리즘 관련 법률에 의해 테러활동의 지원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여 지정이 된 개인·회사와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DIC 그룹 사원은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또는 특별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s)의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개인 또는 회사와의 거래에 종사, 착수하거나 그러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리스트는 매월 갱신되며, 미국 재무부([www.ustreas.gov](http://www.ustreas.gov), 그 후 해외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사이트로 이동), 국제연합, 유럽연합, 영국 중앙은행의 웹 사이트에서 공표되고 있습니다. 반테러리즘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관여한 그룹 각 회사나 개인에게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어서는 최고 종신형, 혹은 경우에 따라서 사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룹 각 회사는 그 거래가 테러리스트나 테러리스트조직, 테러활동 지원조직 등을 원조·지원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⑧강제노동, 아동노동, 분쟁광물

### 강제노동의 금지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강제노동에 관여하는 것은 일절 금지됩니다. “강제노동”이란, 처벌의 위협에 의해 강요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거하지 않은 노동 및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노예노동이나 죄수노동, 숙박노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빗을 이용해서 노동자를 강제노동 상태에 계속해서 두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분증명서를 빼앗거나, 강제예금을 요구하거나,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잔업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

### 아동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이나 아동노동에의 관여는 일절 금지됩니다. “아동노동”이란,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연령조약(Minimum Age Convention)” (제 138호, 1973년)이나, 현지의 법률에 정해진 최저취업연령 중에서 높은 연령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분쟁광물 등의 규제

DIC 그룹은 노예나 인신매매의 박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나 뇌물수수나 오직 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률 등을 준수할 것을 원료의 서플라이어에게 요구합니다. 특히 서플라이어에 대해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2010년), 미국의 인신매매 및 폭력피해자보호법(2000년), 해외오직행위방지법(1977년)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법률에 추가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적용되는 모든 뇌물방지법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또한 서플라이어로부터 공급된 물품에 분쟁광물(주석, 탄탈, 금, 텅스텐) 중 어떤 것이 소량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서플라이어는 미국의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2010년)의 분쟁광물조항을 준수하고, 해당 물질이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의 현지무장세력에 의한 비인도적 행위와 관련된 분쟁광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DIC 그룹은 분쟁광물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분쟁광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제시함과 동시에 거래처와 연계하여 공급망을 통한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IC 그룹은 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주변국의 현지무장세력에 의한 비인도적 행위와 관련된 분쟁광물(금(Au), 탄탈(Ta), 텅스텐(W), 주석(S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분쟁광물의 사용이 판명되었을 경우, 그것들을 함유하는 원재료 조달을 신속히 정지합니다.

## ⑨내부자거래

### 내부자거래에 적용되는 룰은?

“내부자거래”란, 상장기업에 고용되고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비밀정보를 입수하는 입장에 있는 자로, 해당 기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일반적으로 공표되기 전에 수령·입수한 자가 해당 기업의 상장증권(주식, 채권, 옵션, 풋, 콜 등)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DIC는 일본의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그룹 각 회사의 종업원은 모두 내부자거래의 법규제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설턴트, 회계감사인, 변호사, 기타 그룹 각 회사로부터 비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상장기업의 자회사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 각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정보를 알게 되어 그 정보를 이용해서 DIC의 증권 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내부자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그룹 각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DIC나 그룹 각 회사, 기타 상장기업의 비공개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그룹 각 회사의 사원은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기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비공개정보에 의거하여 투자를 할 경우 “내부자거래”에 해당되어 민사책임, 형사책임을 양쪽 모두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그 정보와 관련된 회사가 일반에 공표할 때까지 항상 극비사항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 타인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위법이며, 또한 주식 매매를 장려하는 것도 내부자거래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자신과 그 타인의 양쪽 모두에게 민사벌이나 형사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룹 각 회사사원은 중요한 비공개정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의거해 DIC의 증권을 매매하기 전에 DIC 법무부에 상담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DIC나 그룹 각 회사와 비즈니스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상장기업의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⑩ 적절한 회계와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

### J-SOX 란?

J-SOX 란, 재무보고의 부정이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사베인스-옥스리법을 참고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정해진 내부통제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의미합니다. J-SOX 는 일본의 모든 상장기업 및 그 연결그룹 각 회사에 적용되며,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경영자 평가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DIC 는 일본의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J-SOX 는 모든 그룹 각 회사에 적용됩니다.

### 회계처리 및 보고시 필요한 것은?

DIC 가 J-SOX 의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룹 각 회사의 사원으로서 이하 사항이 요구됩니다.

- 근무하는 그룹 각 회사의 업무절차나 내부통제 메커니즘의 목표·목적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절차나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협력할 것.

- 업무절차나 내부통제 메커니즘에 관한 부정이나 공모, 은폐를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
- 모든 장부나 업무기록(재무, 업무, 경비, 기타 관련 리포트를 포함한다)이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
- 재무서류나 업무기록에 오류나 허위, 부정이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 본 행동규범을 준수함과 동시에 그룹 각 회사의 회계상의 룰이나 업무절차를 따를 것.
- 업무절차 전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을 경우, 그 개선책을 검토·제안할 것.

## 부속자료 A 위반 보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

관련된 법령이나 본 행동규범의 위반행위를 보고할 경우, 본 행동규범, 그와 관련된 DIC 그룹의 정책이나 절차, 회사를 위해 하는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 전자메일, 기타 통신수단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DIC의 인트라넷 경유도 가능. 영어·일본어 모두 가능)

### DIC(일본)

컴플라이언스 담당 집행임원 [쿠도 카즈오 工藤一重] ※  
우편번호 101-0063 도쿄도 치요다구 간다아와지쵸 2-101 와테라스타워  
Tel:03-6733-3000 Fax:03-6733-3022  
[ComplianceOfficer@ma.dic.co.jp](mailto:ComplianceOfficer@ma.dic.co.jp)

법무부  
우편번호 101-0063 도쿄도 치요다구 간다아와지쵸 2-101 와테라스타워  
Tel:03-6733-3000 Fax:03-6733-3022  
[legal@ma.dic.co.jp](mailto:legal@ma.dic.co.jp)

교와종합법률사무소  
우편번호 530-0017 오사카시 기타쿠 가쿠다쵸 8-1 우메다한큐빌딩오피스타워 34층  
Tel: 06-6311-8850  
[diccompliance@kyowa-sogo.gr.jp](mailto:diccompliance@kyowa-sogo.gr.jp)

DIC 본사 컴플라이언스 관계 어드레스: [compliance@ma.dic.co.jp](mailto:compliance@ma.dic.co.jp)

### DIC(중국)

Corporate Legal Manager [미셸 덩 Michelle Ding] ※  
12<sup>th</sup> Fl., Metro Plaza  
No. 555 Lou Shan Guan Road  
Shanghai 200051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86-21-6228-9922 Fax:+86-21-6241-9221  
[legal@dic.com.cn](mailto:legal@dic.com.cn)

DIC China Whistle Blower Committee: [whistleblower@dic.com.cn](mailto:whistleblower@dic.com.cn)

### DIC(아시아 퍼시픽)

Legal and Compliance Manager [하시모토 미치오 Michio Hashimoto] ※  
78 Shenton Way, #19-01  
Singapore 079120  
Tel:+65-6224-0600 Fax:+65-6224-3313  
[legal@dic.com.sg](mailto:legal@dic.com.sg)

DIC AP Whistle Blower Committee: [compliance@dic.com.sg](mailto:compliance@dic.com.sg)

### 윤리 핫라인

법령이나 DIC의 정책에 관한 염려사항이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보고할 경우 DIC 윤리 핫라인 00531-121520 또는 0066-33-112505(일본)으로 전화하거나 [www.EthicsPoint.com](http://www.EthicsPoint.com) 로 접속하여 “File a New Report”를 클릭한 후 Organization Name 에 “DIC Corporation”을 입력한 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일본국 외의 전화번호는 상기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안의 성명은 2014년 7월 현재의 것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인트라넷에 게재되어 있는 본 행동규범을 참조해 주십시오.

## 위반 보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계속)

### SUN CHEMICAL

#### 본 행동규범의 위반에 관한 보고

James G. Van Horn, ~~mEw@S&KHISPLQVWUDWLYH2IILFHU~~, General Counsel & Secretary  
Tel:973.404.6550 Fax:973.404.6439  
E-mail: [jim.vanhorn@sunchemical.com](mailto:jim.vanhorn@sunchemical.com)

Gerry Brady, 최고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Tel:973.404.6373 Fax:973.404.6898  
E-mail: [gerry.brady@sunchemical.com](mailto:gerry.brady@sunchemical.com)

Rudi Lenz, 사장 겸 최고경영책임자(President & CEO)  
Tel:973.404.6400 Fax:973.404.6807  
E-mail: [rudi.lenz@sunchemical.com](mailto:rudi.lenz@sunchemical.com)

법령이나 Sun Chemical 의 정책에 관한 염려사항이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보고할 경우 SunChemical 윤리 핫라인 1.866.730.7932(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로 전화하거나 [www.EthicsPoint.com](http://www.EthicsPoint.com) 로 접속하여 “File a New Report”를 클릭한 후 나타난 화면에서 Organization Name에 “Sun Chemical”을 입력한 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이외의 국가의 전화번호는 상기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편 송부할 경우에는 아래 주소로 송부해 주십시오.

Sun Chemical Corporation  
35 Waterview Boulevard, Parsippany, NJ 07054 U.S.A.

#### 차별 또는 괴롭힘에 관한 고충

차별 및 괴롭힘에 관한 고충은 자신의 상사, 인사부, Sun Chemical 법무부 또는 윤리 핫라인에 연락해 주십시오.

#### 안전, 환경, 건강에 관한 문제

환경, 건강, 안전에 관한 문제나 그 가능성을 보고하는 경우, 또한 해당 분야에 관한 사원의 책무 또는 정책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사 또는 근무하는 회사의 환경문제 담당 부사장 (Corporate Vice President, Environmental Affairs)에게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 부속 자료 B

### SUN CHEMICAL 그룹 사원을 대상으로 한 기준

---

#### 미국 사원 대상

본 행동규범에 기재된 기준은 개인의 행동이나 비즈니스 수행에 관한 정책을 나타낸 것이며, 계약상 기타 고용에 관한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지속적인 고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은 모두 서면계약에 의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원 또는 회사 중 어느 한쪽이 임의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또한 통지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Color & Comfort by Chemistry